

◆ D-12 현장 일용근로자에 대한 해고예고방법과 해고예고수당

건설공사 준공예정일등과 같이 확정되지 않은 날을 예고하여서는 안되며, 반드시 역일로 정한 해고일을 명시하여 당해 일용근로자가 주지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으로 예고하여야 함. (1979. 6. 22. 법무 811-14939)

근로기준법 제32조에는 “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용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한다”라고 규정하고 있는바, 해고예고의 효력발생시기는 및 기간의 계산방법에 대하여는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야 하며, 민법 제111조에 의하면의사의 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, 해고의 예고는 민법 제157조 및 제159조에 의거 당일은 계산하지 않고 그 익일부터 계산하며, 기간의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될 것이므로 예를 들어 97. 4. 1에 해고하고자 하면 늦어도 '97. 3. 1일에 해고의 예고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함.